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3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3월 14일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의)

□ 제안이유

- 시민편의의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전환하고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과 부천시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시·구·동 및 부서간 인력을 적의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조정함.(안 제2조)
 - 총 정원 : 2,103명 ⇒ 2,100명 (△3)
 - 집행기관 : 2,070명(△3) - 의 회 : 30명
- 지방공무원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조정함. (안 별표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정원이 있으면 비전임도 별정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?</p>	<p>○ 전임계약직은 정원으로 관리되어 별정직으로 할 수 있지만 비전임은 정원 외 인력으로 별정직으로 전환이 불가함.</p>
<p>○ 정원조정안에 보면 직급 상황이 있는데 누구를 정해서 하는 것인지?</p>	<p>○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누구를 지정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님.</p>
<p>○ 계약직은 경쟁력 있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 두는 것인데 별정직으로 하면 업무 전문성과 능률만 저하시키는 것 아닌지?</p>	<p>○ 계약직은 재선발이나 재계약 할 기간 동안은 직원 공백과 신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의 연계성과 능률성이 떨어져 별정직화하여 신분보장과 업무 능률을 제고코자 함.</p>
<p>○ 평생학습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데 직원은 충원이 되는지 이관에 따른 업무부담은 없는지?</p>	<p>○ 주민자치센터가 평생학습 업무와 연관이 깊고, 과거사 진상규명 관한 사무 관련 직원이 충원이 되므로 업무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봄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87호
의결 년월일	2006. 3. 17 (제125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3. 8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건축 재정운영을 위한 정원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의 생산성 극대화를 추진하며 시민편의의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전환하는 한편,
- 부동산실거래신고, 보육사무,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안전검사 등 국가사무의 이양과 지방혁신사무가 증가됨에 따라,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세부분장사무와 정원을 책정하고, 시·구 관련부서의 업무를 이관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조정함.(안 제2조)

· 총 정원 : 2,103명 ⇒ 2,100명 (△3)

- 집행기관 : 2,070명(△3) - 의 회 : 30명

나. 지방공무원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조정함. (안 별표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“2,103명”을 “2,100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“2,073명”을 “2,070명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]

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관련)

(단위 : 명)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국	직 속 기 관	사업소	구청	동
총 계	2,100	<u>837</u>	30	102	44	<u>687</u>	<u>400</u>
정무직 계	1	1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1,722	<u>619</u>	20	91	32	<u>565</u>	395
2급	1	1					
3급							
4급	14	7	1	3		3	
5급	111	37	2	8	1	26	37
6급	<u>367</u>	<u>151</u>	5	18	8	<u>148</u>	37
7급	<u>563</u>	<u>248</u>	9	28	11	<u>154</u>	113
8급	421	<u>156</u>	3	31	3	<u>164</u>	64
9급	<u>245</u>	<u>19</u>		<u>3</u>	9	<u>70</u>	144
별정직 계	<u>8</u>	<u>8</u>					
5급상당							
6급상당	<u>3</u>	<u>3</u>					
7급상당	<u>5</u>	<u>5</u>					
8급상당							
연구직 계	2	2					
연구원							
연구사	2	2					
지도직 계	8	8					
지도관							
지도사	8	8					
기능직 계	<u>359</u>	<u>199</u>	10	11	12	122	5
기능6급	11	10				1	
기능7급	42	31			2	8	1
기능8급	66	<u>38</u>	3		2	<u>21</u>	2
기능9급	<u>104</u>	<u>53</u>	6	4	6	<u>33</u>	<u>2</u>
기능10급	<u>136</u>	<u>67</u>	1	7	2	<u>59</u>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) 부천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 <u>2,103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2,073명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원).....</p> <p>.....<u>2,100명</u>...</p> <p>.....</p> <p>1.<u>2,070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